#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703

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 박수현 · 오세희 · 이연희

조인철・이개호・황 희

박용갑 • 이건태 • 정준호

위성곤 · 신영대 · 임호선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사진이란 작가의 사상·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·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5조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·제작·개발·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(안 제7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,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·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마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등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 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고, 사진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, 박람회 등 참여와 국내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
#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사진"이란 작가의 사상·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·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 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사진작품"이란 작가가 사진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·무형의 창작물(종이 등 유형물에 나타내거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 - 3. "사진산업"이란 사진작품의 창작·제작·유통·전시·교육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사진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5조(사진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을 위하여 사진진흥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사진의 진흥을 위한 중·장기 기본방향
  - 2. 사진의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- 3. 사진의 창작활성화에 관한 사항
  - 4. 사진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  - 5. 사진의 국제교류 ·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
  - 6.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 - 7.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
  - 8. 그 밖에 사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

- 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 정책의 수립·시 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환경, 유통 환 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야 한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진 관련 단체 등에 자 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·내용·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사진 창작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·제작·개발·유통(이하 "사진 창작등"이라 한다)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진창 작자 및 사진 창작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·단체에게 예

-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학교, 사진에 관한 연구·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·훈련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·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- 4. 이 법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
-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·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기술개발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,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·조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사진의 기술적 보호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
  - 2. 사진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·홍보
  - 3.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1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관

런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국제전시회, 박람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지원
- 2. 국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
- 3. 국가 간 사진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사업
- 4.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12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